

# 서울특별시

공  
문  
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팩스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1116

시행일자 1993. 8. 31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훈령발령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길		
법무 담당관			
법 제 개 장			
기안	이부영		
			협조

1. 서울특별시보안업무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훈령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공보관

참조 : 공보1담당관

제목 : 시보게재

227

1. 별첨 서울특별시보안업무운영규정중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2부. 끝.

## 서울특별시장

(기획관리실장 전길)

(제 3 안)

수신 : 총무과장

제목 : 훈령발령 통보

1. 총부 17010-1272(93. 8. 20)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보안업무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3. 8. 31.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생략). 끝.

## 서울특별시장

(기획관리실장 전길)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운용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9원



## 서울특별시보안업무운용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보안업무운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구 및 그 산하기관(이하 "시·구 및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구 및 그 소속기관·하부기관(이하 "시·구 및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중 "다만, 산하기관 및 시투자기관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4급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사업소는 구협의회에 준한 협의회를 둔다"를 "다만, 4급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산하기관 및 시투자기관은 구협의회에 준한 협의회를 둔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하고, "환경복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비밀취급인가신청 및 갱신을 하여야 한다"를 "비밀취급인가신청 및 갱신 또는 변경신청(별지 제16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Ⅲ급비밀취급인가신청은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가증은 갱신하여야 한다"를 "인가증은 갱신하거나 인가증 이면(별지 제17호서식)에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Ⅲ급비밀취급인가증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특별인가) ① 시·구 및 산하기관과 시투자기관의 장·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Ⅱ급비밀취급권을, 소방공무원은 Ⅲ급비밀취급권을 임용과 동시에 가진다. 다만, 임용과 동시에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중 "보안담당관"을 "비밀취급인가사무취급과장"으로 한다.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퇴직자의 보안조치) 공무원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퇴직자보안서약서에 의해 서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을 받는자는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과장급이상 직근상급자가 된다.

제26조의 3 (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① 해외여행공무원 보안교육은 해외여행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과장급이상 직근상급자가 실시한다.

②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내용을 확인하여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업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제2항중 "대의비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의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하며"를 "대의비문서의 수발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발하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나목 "지하상황실"을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연습기간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환실, 기계실, 기관실"을 "전화시험실, 음향실, 기관실 및 지하상황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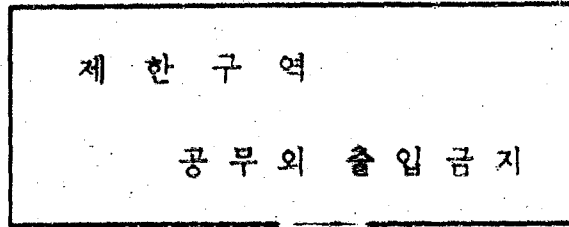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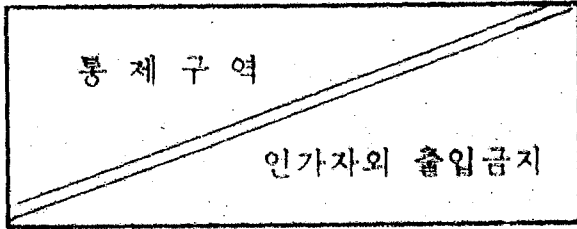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내지 <별지 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보 호 구 역 표 시



※ 통제구역은 백색바탕·적색글씨·적색 테 및 대각선  
 ※ 제한구역은 백색바탕·청색글씨·청색 테

※ 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의 조절하며, 송판·합판 또는 아크릴등 견고한 재질 사용(종이는 불가)

<별지 제16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변경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 ○ 과장

199 . .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 내용을 변경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자	소 속			직책 및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가등급	Ⅱ . Ⅲ	인가일자		인가번호	
변경내용						

첨부 : 인가증 1매.

신 청 자 : ○ ○ ○ 장

(인)

위 공무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에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확인함

일 자	기 록 내 용 ( 변 경 사 항 )	비 고

199 . . . . .

○ ○ ○ 장

(인)

<별지 제17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이면

일 자	변 경 내 용	확 인

<별지 제18호서식>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인식하여 퇴직후에도 알게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19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